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4. 12.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11. 18.

나. 제안자 : 마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4. 11. 21.

○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14. 12. 03. ~ 12. 0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 2014. 12. 09.

라. 상정일자 : 제192회 제2차정례회 제1차위원회(2014.12.10.)

제192회 제2차정례회 제2차위원회(2014.12.11.)

제192회 제2차정례회 제3차위원회(2014.12.12.)

제192회 제2차정례회 제4차위원회(2014.12.15.)

제192회 제2차정례회 제5차위원회(2014.12.16.)

제192회 제2차정례회 제6차위원회(2014.12.17.)

제192회 제2차정례회 제7차위원회(2014.12.18.)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나. 제출내역

○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주요내용

○ 2015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총 16개 기금 333억 7,453만 8천원으로,
전년도 16개 기금 428억 9,693만원 대비 95억 2,239만 2천원이 감소함.

4. 전문위원 검토보고(전문위원 : 박상수)

1) 기금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3년도말 현재액 ^㉔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말 현재액 ^㉕ = ^㉔ + ^㉖ - ^㉗	증 감 ^㉘ = ^㉕ - ^㉔	증감률
		수입 ^㉖	지출 ^㉗			
합 계 (통합관리기금제외순계)	43,487,816 (27,976,816)	19,028,225 (17,626,745)	16,485,999 (12,709,519)	46,030,042 (32,894,042)	2,542,226 (4,917,226)	5.5% (14.9%)
재난관리기금	2,114,020	780,115	580,420	2,313,715	199,695	9.4%
남북교류협력기금	0	50,000	50,000	0	0	-
중소기업육성기금	1,300,000	3,427,619	3,701,120	1,026,499	△273,501	△21%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186,064	695,510	600,840	2,280,734	94,670	4.3%
자활기금	1,462,568	82,708	34,200	1,511,076	48,508	3.3%
노인복지기금	703,550	123,939	23,490	803,999	100,449	14.3%
성평등기금	1,912,680	65,622	65,622	1,912,680	0	-
환경·문화·여성·학금·대중기금	828,970	127,410	357,280	599,100	△229,870	△28%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1,579,688	123,572	133,060	1,570,200	△9,488	△0.6%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630,130	16,940	420	646,650	16,520	3%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12,184,443	2,481,890	5,443,132	9,223,201	△2,961,242	△24.3%
옥외광고정비기금	1,073,376	407,000	476,040	1,004,336	△69,040	△6%
도로굴착복구기금	916,125	829,940	803,100	942,965	26,840	2.9%
식품진흥기금	1,085,202	375,480	440,795	1,019,887	△65,315	△6%
통합관리기금	15,511,000	1,401,480	3,776,480	13,136,000	△2,375,000	△15.3%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 건립기금	0	8,039,00	0	8,039,000	8,039,000	100.0%

2) 기금별 사업계획

연 번	기금명	주요사업내용	비고
1	재난관리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참석수당 420천원 ▪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 200,000천원 ▪ 재난응급복구 및 예방사업비 200,000천원 ▪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공사 130,000천원, ▪ 용자금 50,000천원 	

연번	기금명	주요사업내용	비고
2	남북교류협력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북사업 40,000천원, 위원회 참석수당 1,800천원 남북교류협력관련 책자 제작 8,200천원 	
3	중소기업육성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참석수당 1,120천원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200,000천원 민간융자금 3,500,000천원 	
4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참석수당 840천원, 융자금 600,000천원 	
5	자활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활근로사업단 전문가 인건비 25,200천원 참여자 역량강화 5,000천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 4,000천원 	
6	노인복지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참석수당 490천원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기관 지원금 23,000천원 	
7	성평등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참석수당 등 1,178천원 안전지도 및 여성주간행사 13,000천원 학교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 사업 4,500천원 여성복지 공모 46,000천원, 도움벨 설치 200천원 기저귀 교환대 설치 700천원, 기타편의시설 설치 44천원 	
8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원회참석수당 280천원, 학자금대여 32,000천원 일반회계 전출 325,000천원 	
9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활용품 운반 차량 덮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교체, 3M 방진마스크 구매,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75L) 구매 등 101,060천원 쓰레기 제로화 사업 동 경진대회 12,000천원 청소차고지 재활용선별장 정비 20,000천원 	
10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금운용심의위원회참석수당 420천원 	

※ 통합관리기금 관리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년	2013년	비고
합 계	13,136,000	15,511,000	
재난관리기금	1,600,000	900,000	
자활기금	1,426,000	1,426,000	
노인복지기금	800,000	700,000	
성평등기금	1,900,000	1,900,000	
환경미화원 학자금	3500,000	525,000	
재활용품판매관리기금	1,210,000	1,210,000	
자원회수시설 관리기금	5,000,000	8,000,000	
식품진흥기금	850,000	850,000	

- 2014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총 16개 기금 460억 3,004만 2천원으로, 전년도 15개 기금 434억 8,781만 6천원 대비 25억 4,222만 6천원이 증가함.
- ▶ 수입계획
 - 전입금 17억 6,405만 5천원, 융자금회수 43억 3,740만 3천원,
 - 예탁금원금회수 33억 2,500만원, 예치금 회수 279억 7,681만 6천원,
 - 예수금 9억 5천만원, 이자수입 11억 9,896만 9천원,
 - 기타수입 107억 7,779만 8천원
- ▶ 지출계획
 - 고유목적사업비 70억 9,882만원, 융자금 45억 3,200만원,
 - 인력운영비 9,363만 8천원, 기본경비 6억 6,006만 1천원,
 - 예탁금 9억 5,000만원, 예치금 328억 9,404만 2천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37억 7,648만원, 기타 지출 3억 2,500만원
-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계상된 131억 3,6008만원을 제외하면 15개 기금의 운용 순계액은 328억 9,404만 2천원임

4. 검토결과

-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추진의 융통성, 효과성,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가치를 두고, 행정의 신축성과 특정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하여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운용하며,
-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자금이라 할 수 있으므로,
- 기금운용시 자의적이고 부적절한 집행의 발생 방지 및 그간 기금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정확한 산출근거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 또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기금을 제외한 자체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례는 조속히 개정하고 향후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종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사항 : 없음